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안)

제정 2023.11.20.

시행 2023.11.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원격수업 강좌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원격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온라인강의와 사전녹화영상강의로 나누어진다.

제3조(운영 원칙) ① 원격수업은 온라인강의콘텐츠와 콘텐츠 외 활동으로 구성한다. 온라인강의콘텐츠는 교수자가 직접 촬영·제작·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강의 또는 사전녹화영상강의를 뜻하며, 콘텐츠 외 활동은 온라인을 통한 과제, 퀴즈, 질의응답, 토론, 교수자의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

② 원격수업의 강의 및 학습활동은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사이버캠퍼스(Learning Management System, 이하 “LMS”라 한다)를 통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격수업 교과목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실시간 온라인강의의 경우 담당 교강사는 수업을 마친 후 이를 녹화하여 L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전녹화영상강의인 경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업시수당 총 학습시간은 50분 이상이어야 한다.

2. 순수 강의영상 재생시간은 수업시수당 25분 이상이거나 한학기당 325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총 학습시간은 제3조5항2호의 강의영상 및 토론, 과제, 퀴즈, 질의응답 등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업시간 전 녹화영상은 LM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사전녹화형강의 콘텐츠 개수 및 분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2학점인 경우 2개 이내 50분 이상

2. 3학점인 경우 2~3개 75분 이상

제4조(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 ①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주관대학에 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를 두며,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의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5조(원격수업 지원) ① 소속 대학은 원격수업의 교수력 향상 및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한다.

② 소속 대학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LMS 관리와 동영상 콘텐츠 촬영 및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개설기준) ① 원격수업 개설은 소속 대학을 경유하여 신청 가능하며,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② 원격수업 교과목은 소속 대학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팀 티칭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운영은 강의콘텐츠를 개발한 교강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개발된 강의콘텐츠를 활용하여 타 교강사가 원격수업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사정, 연구년, 보직발령 등으로 강의 운영이 한시적으로 불가능하여 개발 교강사가 타 교강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2. 개인사정 또는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개발 교강사가 학기 직전 또는 학기 중 퇴직한 경우

3. 분반을 운영하는 경우

4.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경우

④ 천재지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학사 운영이 필요할 경우 개설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출석기준) ① 원격수업의 출석체크는 LMS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시간 온라인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담당 교강사는 수업 시작 시 출석체크 후 이를 LMS에 기재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출석 정보를 학사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녹화영상강의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경우 출석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출석: 출석인정기간 내에 학습동영상의 진도율 90% 이상

2. 지각: 출석인정기간 내에 학습동영상의 진도율 80% 이상 90% 미만

3. 결석: 제 1,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7조 5항에 해당한 경우

④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 부주의로 발생하는 출석 오류는 인정하지 않으나, 담당 교강사가 수강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는 출석 인정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지침 제 10조에 따라 접속시간 지각 3회일 경우 결석 1회로 환산한다.

제8조(강의평가) ① 원격수업 교과목의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정해진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원격수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강의평가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정보보호)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온라인강의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 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수강 학생은 담당 교강사의 승인 없이 강의를 녹화 또는 캡처하는 등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개발된 강의콘텐츠를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대학 및 교강사가 이용할 경우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강의콘텐츠를 개발한 교강사가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대학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강의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자료의 무단 복사 및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해당 교강사에게 있다.

부칙(2023.11.30)

이 규정은 2023.11.30. 부터 시행한다.